

혁신을 넘어 가치로, K-VIP :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Value-up

**「2026년 제 2차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K-VIP (Korea BioHealth Value-up Innovation Program)
수행기업 모집 통합 공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진출 및 수출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 2차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K-VIP : Korea BioHealth Value-up Innovation Program)」의 수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붙임 서식

- ① 2026년 제2차 제약·바이오 K-VIP 프로그램 사업신청서(양식)
- ②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운영 지침

1 | 통합공고 개요

□ 사업 목적

- 세계 각국의 수출입 규제 강화, 공급망 리스크, 통상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글로벌 진출 역량의 체계적 지원
- 정부의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 목표 이행을 위한, 제약·바이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사업 구성 및 세부사업 개요

사업명 및 세부사업내용	지원규모 (연간)	과제 구성요건	선정 과제 수
<글로벌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글로벌 전문컨설팅 지원 컨소시엄 구성,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컨설팅 소요 비용 지원	최대 1억원	컨소시엄	7社 참고1 15p
<글로벌 규제 대응 비용 지원> 글로벌 규제 대응 비용 지원 해외 인허가 획득, 유지·갱신 및 규제기관 질 의·보완 대응 비용 지원	최대 2억원	단독	14社 참고2 18p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트랙1] 글로벌 학회·전시회·파트너링 행사 참가지원 [트랙2]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지원 * 선정 과제 수는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과제 선정 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	트랙당 최대 25백만원	단독	트랙당 9社 이상* 참고3 24p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9월 예정) ~ '27.2.28(다년도 사업 경우 성과평과 후 2차년도 연속 지원) * 지원비율 :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총사업비의 대기업 50%, 중견 70%, 중소벤처 75% 지원) ※ 선정 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은 국고보조금 상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 공통 신청자격

□ 참가자격

- 글로벌 진출 또는 수출입 확대를 추진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 사업 내용에 따라 컨설팅기업 등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및 참가 가능
 - 기업 규모 제한 없음

※ 세부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신청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 파산·회생절차 진행, 부정수급 이력 등 결격사유 해당 기업은 신청 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기 지원된 사업과 유사·중복이 확인된 경우
7.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 및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등으로 교부 취소를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3 | 신청방법

□ 공모 및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 ~ 2026년 8월 14일(금) 16:00까지(KST 대한민국 표준시)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 세부 사업별 제출 및 문의처

※ 복수 사업 신청시 각 사업 담당자를 수신인에 모두 추가 필요(FAQ 1번 참고)

No.	세부사업명	담당자명	문의 및 제출처
1	글로벌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전성주 책임연구원	043)713-8847
			sjeon6@khidi.or.kr
2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	임사랑 연구원	043)713-8846
			ssss1567@khidi.or.kr
3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김민주 연구원	043)713-8842
			minju929@khidi.or.kr

- 본 공고의 신청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참가 신청을 불인정함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됨
- 가산점 부여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부여대상이더라도 증빙 미 제출시 가산점 미 부여)
- 전자파일 제출 후 원본을 우편 제출 요청할 수 있음(필요 시 안내)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목 필수 기재 (**[신청서 제출] K-VIP_기업명(세부사업명)**)

이메일 본문 내에 신청서 제출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재

신청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취합 제출

모든 서류를 취합한 파일을 hwp, pdf 파일로 각 1부씩 제출

※ 제목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확인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업에게 있음

□ 신청서류

연번	제출 서류
1	사업신청 공문(자사 양식, 직인 날인)
2	사업신청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3	지원서약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6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	기업분류 증빙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8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9	가점사항 증빙서류
10	기타 관련 증빙서류 일체 수행기업의 기술력 및 제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년도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업 제품의 국내외 인허가 증명서 등 ※ 각 사업별 필수 증빙 서류는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제출 필요

4 | 사업 추진 절차

□ 추진절차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다년도 사업 경우 최종 평가를 통한 성과 점검 후 2차년도 연속 지원 가능

5 |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거쳐 선정
 - 서류검토 : 신청기관 자격 여부, 제출서류 및 기업부담금 확보 여부 등 형식요건을 사전 확인
 - 서면평가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하여 계획 및 비용의 적합성·타당성을 검토
 - 발표평가 : 세부사업별로 개별 실시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의 부합성과 추진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 평가일정은 개별 통지 예정
- 사업별 적정 수준의 선정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공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6 | 유의 사항

□ 지원 조건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을 따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2회 분할(7:3) 지급하며, 1차분은 협약 체결 후(9월 예정), 2차분은 중간보고 진행 후(11~12월 예정) 사업비 교부

※ 사업예산은 협약일로부터 집행가능(협약 행정 절차 진행 중 사용 금액 소급적용 가능)

- 예산 비목의 정의 및 사용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하며, 보조금 사업 및 지원사업의 특성상 간접비 등은 사업비에 편성·계상할 수 없음

* 각 세부사업별 제안요청서를 통해 지원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확인 필수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신청기업 기업규모별 ‘중소·벤처기업’은 25%, ‘중견기업’ 30%, ‘대기업’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칭

○ 총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대비 기업규모별 기업부담 차등 매칭

* 중소벤처기업 25%지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75백만원 지원 시 기업부담금 25백만원 매칭

국고보조금 100백만원 지원 시 기업부담금 약 33.4백만원 매칭

* 국고보조금 교부 전까지 기업부담금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금하고,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함

- (사업정산) 본 과제는 정산과제로, 사업종료 즉시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통해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점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등 사업 점검 결과 당초 계획과의 불일치, 고의·중과실에 따른 사업 지연 등 사업수행 미흡이 확인될 경우, 사업 중단 및 보조금 조정·환수 조치 할 수 있음

□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의무사항

○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①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추진비용을 지원
- ② 수행기업의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KHIDI 해외지사 등을 활용한 중개 지원 가능
- ③ 사업 주요 성과(공개 가능한 자료) 대외 공개 및 홍보 지원

* 주요성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계약산업 정보포털 등)에 공개 가능

○ 사업 수행기업

- ① 사업 수행기업은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사업 기간 내 실현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상세하게 작성

- ② 사업 예산은 사업 계획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보고서 함께 제출

* 회계 정산 비용은 정부 지원금 예산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

- ③ 관리기관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

- ④ 사업 수행기업은 결과 평가 시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신청분야에서 달성한 성과(계량·비계량)를 필수 제출

- ⑤ 사업 수행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업기간 이후에 시행하는 후속 성과관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연도별 성과 : ① 지원 사업 당해 년도 및 차년도의 지원 제품 및 기업의 매출수출 실적 (계약건이 차년도로 진행될 경우 차년도 성과 제출) ② 지원 사업을 통한 유무형적 성과

※ 성과 보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과교류회, 보도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성과 보고 시 대외비 자료는 KHIDI와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 가능

- ⑥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유 제품·기술 수출, 공동 연구 등 계약 체결,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시판 허가 등 주요 성과 홍보 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을 통한 성과임을 표현

Q1.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별도로 제공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각 사업 담당자 메일(3p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 사업 신청 시 신청하는 모든 사업의 담당자를 수신인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별 발송이 아닌 전체 수신인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송 필요)
예) 글로벌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동시 신청 시 받는 사람: sjeon6@khidi.or.kr, minju929@khidi.or.kr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 K-VIP_기업명(세부사업명)'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확인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출 기업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 [신청서 제출] K-VIP_한국기업(전문컨설팅 지원(다년도),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트랙1))

Q2.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안서가 접수되면 사업담당자가 서류 누락 여부 및 기업 지원조건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서류검토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는 과제만 선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서면평가(1차)만 진행하거나 발표평가(2차)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세부 절차는 각 제안요청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성을 위해 모든 선정평가는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최종 지원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후 협약합니다.

Q3. 동일한/상이한 품목·기술로 여러 세부사업에 중복 지원 가능한지?

A. 동일 기업은 동일 또는 상이한 품목(기술)으로 복수의 세부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세부사업에는 품목(기술) 수와 관계없이 1건의 프로젝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이한 품목(기술)을 나누어 복수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a품목과 b품목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 ㉡사업을 신청할 경우

- ㉠사업-a품목, ㉡사업-a품목 신청 : 가능
- ㉠사업-a품목, ㉡사업-b품목 신청 : 가능
- ㉠사업에 a+b 품목으로 구성한 진출프로젝트 1건 신청 : 가능
- ㉠사업-a품목, ㉠사업-b품목 신청(㉠사업에 총 2건 신청) : 불가능

Q4.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던 유사, 혹은 동일한 과제로 지원이 가능한지?

A. 동일한 품목으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수행한 과제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후 적발 시 협약해지 및 보조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제안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타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학회·전시회·파트너링 행사 참여 계획을 세우는 경우
- * (예시) 수출바우처(산자부·중기부) → CPHI Worldwide / K-VIP 마케팅 지원 → BIO US 참가

A.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본 K-VIP 사업 내 다른 과제와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과제에 따라 일부 내용은 중복집행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

Q5. 대면평가에는 꼭 사업책임자가 참석해야 하나요?

- A. 모든 대면평가(선정평가(2차 발표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는 사업책임자의 참석 및 발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기관(KHIDI)에 전달하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단,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평가, 중간점검은 서면평가로 대체됩니다. (최종평가 시에는 발표 있을 수 있음)

Q6. 협약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문 및 사업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7.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금번 공고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인건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8. 회계검토 수수료를 예산 내에 편성해야 되나요?

- A.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각 세부사업 규모에 맞게 각각 편성해주세요.
- ※ 영리기관(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수료를 산출내역에 계상
- ※ 예산 내 편성하지 않을 시, 사업비 외 비용으로 수행기업이 부담

회계법인 검증수수료 기준	
총 사업비 규모 (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합계 금액)	표준수수료 (부가가치세 제외)
5천만원 미만	672,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12,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768,000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867,000원

Q9.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고보조금은 단계적으로 분할 교부합니다.

협약 체결 후 1차로 70%를 교부하고, 중간점검(11~12월 예정) 결과에 따라 잔여 30%를 교부합니다.

보조금 교부 시기 및 분할 비율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10. 사업수행을 위한 계좌는 총 2개가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계좌는 e나라도움 예탁계좌(국고보조금 교부용 가상계좌)와 기업부담금 계좌의 총 2개입니다.

예탁계좌는 사업 신청 시 기업부담금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Q11. 기업부담금은 꼭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나요?

A. e나라도움 시스템의 자부담 집행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등록하기 위한 신규 계좌를 만들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부담 금액 비율만큼 현금을 입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Q12. KHIDI 제약바이오 글로벌진출 지원사업(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가산점 적용기간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최근 3년간('24~'26)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한 프로그램(BIO Europe, BIO China, CPHI SEA 등)에 선정된 참여기업에 한하며, 타기관에서 단독 주관 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참여한 것은 가산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13.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출 피해기업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각 사업별 평가항목 조건표 내 중동 전쟁 피해기업 대상 가점 부여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점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중동 국가 대상 '24~'26년 수출 실적 또는 '26년 수출 계약 관련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서, 수출 계약서, 수출 계약 취소 통보 이메일 등)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4 (글로벌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사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복수의 컨설팅사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

- A-1. 국내외 컨설팅사 모두 가능하나, 기업(법인)이 아닌 개인 전문가가 컨설팅 사업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A-2. 복수의 컨설팅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능 합니다.

Q15. (글로벌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단년도 과제로 선정 후 다년도 과제로 전환 가능한가요?

A. 단년도 과제로 선정 후 다년도 과제로 전환은 불가능하므로, 자체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한 신청 바랍니다.

Q16.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학회·전시회만 참가 가능한가요? 참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학회·전시회 목록은 참고용 예시이며, 제시된 목록 이외의 학회·전시회도 참가 가능합니다.

※ 단, 과제 수행기간 내에 참가할 수 있는 학회·전시회만 인정됩니다.

**Q17.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학회 참가를 위해 출장 여비 편성 시
단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A. 회사 자체적으로 여비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 ※ 정산 시 회사 여비 규정 제출 필요
- A. 단, 비즈니스석 탑승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 임원의 비즈니스석 탑승 규정이 있으실 경우, 이코노미 탑승권 금액만 인정됩니다.
(비즈니스석 차액은 사업비 외 비용으로 자체 부담)
- A. 만약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편성 및 집행하시면 됩니다.

**Q18.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협약 이후 갑자기 학회·전시회 참가
계획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가고 싶은 학회·전시회가
생겼는데 가도 괜찮을까요?**

- A. 협약 체결 시 승인된 사업계획에 명시된 학회·전시회 참가만 인정이 됩니다.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만 해당 학회 참가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원칙적으로 사후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 A. 참가 인원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의 참가비만 인정됩니다. 기존 인력의 퇴사, 신규입사, 조직이동 등으로 학회·전시회 참가 인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만 변경 인력의 참가비용 정산이 가능합니다.

Q19.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트랙 1, 2를 중복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지원하실 경우 트랙별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지원 가능한 총 국고보조금은 최대 50백만원입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1차 공고 선정 기업도 트랙2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 1

글로벌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제안요청서

세부 사업명	글로벌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과제 구성요건	컨소시엄 (수행기업-컨설팅사)
▶ 지원목적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분야별 심화컨설팅 지원을 통한 신속·전략적인 진출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 지원조건: 수행기업이 제안한 글로벌 진출 전략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전문 컨설팅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과제당 국고보조금 연간 최대 100백만원(2년간 최대 200백만원) -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현금) 으로 구성함 (기업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선정 예정 과제 수: 총 7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2027.11.30.) * 1차년도 협약기간: 협약체결일~2027.2.28. * 2차년도 협약기간: 2027.3.1~2027.11.30. - 신청기업은 지원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년도(2년) 사업을 수행할 경우 1차년도 최종평가를 통해 2차년도 연속 지원여부 결정 ○ 기업 규모별 기업부담금 매칭 조건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30%, 대기업 50% * 기업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대비 해당 비율 매칭 필요 * 예)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국고보조금 100백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은 약 33.4백만원 총 사업비(100%)=국고보조금(75%)+기업부담금(25%) - 선정 평가 과정에서 사업 계획 적절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글로벌 진출을 위한 분야별 기업 수요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영역 ■ 글로벌 신약 개발 기획 컨설팅 ■ 글로벌 인허가 및 임상 컨설팅 ■ 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무·특허·세무·관세 컨설팅 ■ 글로벌 사업화·유통·투자·라이선싱 컨설팅 ■ 해외 법인 설립 및 현지화 컨설팅			
▶ 선정기업 지원 혜택 ○ 차년도 KHIDI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 성과목표 및 결과 활용 ○ 최종평가 시 필수 결과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평가 시 목표달성 여부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 ○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성과조사, 공시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 해야 함 ○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유 제품·기술 수출, 공동 연구 등 계약 체결,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시판 허가 등 주요 성과 홍보 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을 통한 성과임을 표현			

▶ 평가 및 선정 방법

서류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 검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 기회 부여, 자료제출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처리)



발표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

- 사업 수행 계획 발표(수행기관 사업책임자 발표, 컨설팅사 참석)
- 신청기업의 역량과 수행 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 평가
- 평가 점수에 따라 협약 대상 과제 선정

▶ 선정평가 기준

- 서류검토를 통한 1차 적격 여부 확인 후 발표(대면) 평가 실시
- 평가 시 항목 변동 가능

<선정평가 기준(안)>

항목	평가기준	평가내용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 (20)	사업 목적 및 취지 부합성	■ 사업 목적과 제안 과제 목표의 부합성 ■ 사업 추진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컨설팅 계획의 적절성 (20)	추진 계획의 적정성	■ 추진 전략 및 방법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
	예산 및 자원배분의 적정성	■ 사업 예산 산출의 타당성 ■ 예산 활용 계획의 합리성 ■ 산출물 도출을 위한 자원 운용 계획
추진 역량 및 실적 (30)	수행기업의 역량	■ 사업 참여 의지 및 수행 적극성 ■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명확성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 유사 컨설팅 수행 실적 ■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명확성 ■ 협업 체계의 구체성
	지원 기술·제품의 우수성	■ 지원 기술·제품의 시장성 및 우수성 ■ 기존 기술·제품 대비 경쟁력
기대효과 및 파급력 (30)	사업 결과의 기대 효과	■ 컨설팅 결과의 실제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연계 가능성 ■ 컨설팅 결과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 및 사업 성과 창출 기대 수준 ■ 지속 가능한 기업 역량 강화 효과
가점 (최대 7) * 중복 적용 가능	인증 기업 또는 기술 (2점, 개별 건 당)	■ 혁신형 제약기업 ■ 신청 기술이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24~'26) KHIDI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1점, 개별 사업 당)	■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 (현재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기업) ■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 참여기업 (BIO Europe, BIO CHINA, CPHI SEA 등)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피칭 우승 기업 (암젠 골든티켓, 아스트라제네카 K-바이오익스프레스웨이,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 등)
	중동 전쟁 피해기업 (2점)	■ 최근 3년간('24~'26) 중동 국가 수출 실적 또는 '26년 수출 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 계약 또는 수출 실적 증빙 제출 필요(수출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 가점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불가

▶ 본 세부사업 문의처

- 제약바이오글로벌팀 전성주 책임연구원 043)713-8847, sjeon6@khidi.or.kr

사업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글로벌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비 회계검증수수료
	일반용역비 (14)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사업 개발, 인허가, 법무·특허·세무·관세 컨설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외부기관에게 대행시킴에 따라 발행하는 비용

- ※ 사용 제한: 위 내역 외 인건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등 계상 불가능
 ※ 해외 시장 진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인허가 획득 및 유지·갱신을 위한 실비성 비용은 계상 불가하며,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참고 2

글로벌 규제 대응 비용 지원사업 제안요청서

세부 사업명	글로벌 규제 대응 비용 지원	과제 구성요건	단독
▶ 지원목적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인허가 및 국가별 규제 대응 비용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촉진 ○ 국가별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 과정의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을 촉진 ※ 비·임상시험 등 연구개발(R&D) 비용 및 GMP 구축·운영 비용 제외			
▶ 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제약바이오 기업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 의약품(원료의약품,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백신 등)의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해외 품목 등록, 허가 유지·변경 및 국가별 규제 요건 대응이 필요한 기업		
지원 기간	○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2027.11.30.) * 1차년도 협약기간: 협약체결일~2027.2.28. * 2차년도 협약기간: 2027.3.1~2027.11.30. - 신청기업은 지원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년도(2년) 사업을 수행할 경우 1차년도 최종평가를 통해 2차년도 연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및 범위		
해외 인허가 및 규제기관 대응 지원	○ 해외 허가·등록 신청 지원 - FDA, EMA, PMDA, NMPA 등 해외 규제기관 허가·등록 대응 비용 지원 - NDA, BLA, ANDA, MAA 등 해외 허가 신청 지원 - CTD/eCTD/ACTD 작성·변환·번역·제출 지원 - 규제기관 공식 사전상담(Pre-meeting) 비용 지원		
	○ 규제기관 질의(Query)·보완 대응 지원 - 해외 규제당국의 질의(Query) 대응 지원 - 허가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완자료 작성·제출 지원 - 규제기관의 공식 보완요청에 따라 요구된 시험·분석·검증 비용 지원 - 규제기관과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대응 지원		
	○ 해외 허가 유지·변경관리 지원 - 허가 후 변경허가(Variation) 지원 - 허가 갱신(Renewal)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 - 국가별 허가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대응 지원		
	○ 현지 등록 및 행정절차 지원 - 현지 MAH(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지정 및 등록 지원 - 국가별 제품 등록 절차 및 신고·수수료 지원 - 국가별 인허가 수수료 및 등록 관련 비용 지원		

항목	평가기준	평가 내용
(최대 7) * 중복 적용 가능	기술 (2점, 개별 건 당)	■ 신청 기술이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24~'26) KHIDI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1점, 개별 사업 당)	■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 (현재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기업) ■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 참여기업 (BIO Europe, BIO CHINA, CPHI SEA 등)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피칭 우승 기업 (암젠 골든티켓, 아스트라제네카 K-바이오익스프레스웨이,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 등)
	중동 전쟁 피해기업(2점)	■ 최근 3년간('24~'26) 중동 국가 수출 실적 또는 '26년 수출 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 계약 또는 수출 실적 증빙 제출 필요(수출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 가점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불가		
▶ 평가 및 선정 방법		
서류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기업,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등 신청서류 검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 기회 부여, 자료제출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처리)
↓		
발표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		· 신청기업에 관한 내용, 사업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서면 평가 · 평가 점수에 따라 협약 대상 과제 선정
▶ 본 세부사업 문의처		
- 제약바이오글로벌팀 임사랑 연구원 043)713-8846, ssss1567@khidi.or.kr		

사업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글로벌 규제 대응 비용 지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비 회계검증수수료 - 해외 규제기관 허가·등록 수수료
	일반용역비 (14)	전문용역비 -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등록·승인 절차 수행 과정에서 전 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외부기관에게 대행시킴에 따라 발행하는 비용
※ 사용 제한: 위 내역 외 인건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등 계상 불가능		
※ 비·임상시험 등 연구개발(R&D) 비용 및 GMP 구축·운영 비용 제외		
※ 일반용역비로 컨설팅사 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 정산 시 컨설팅사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FAQ. 해외 인허가 및 규제기관 대응 지원

Q1. eCTD 작성·변환·제출 비용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해외 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eCTD 작성, 제출 포맷 변환, 전자제출 시스템 대응 비용은 지원 가능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문서 정리 목적이 아닌 실제 해외 허가·등록 신청과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Q2. CTD 번역이나 ACTD 변환 비용도 지원 가능한가요?

A. 국가별 허가 제출을 위해 필요한 CTD 영문 작성, 번역, ACTD 변환, 제출 양식 재구성 비용은 지원 가능합니다. 단순 번역이 아닌 해당 국가의 제출 요건에 맞춘 문서화 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NDA, BLA, ANDA, MAA 등 해외 허가 신청 관련 비용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해외 규제기관에 의약품 허가·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자료 작성, 제출, 번역, 전자문서화 및 규제 대응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현지 MAH 지정이나 현지 등록 대행 비용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해외 허가·등록 과정에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현지 MAH(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지정, 현지 등록 및 관련 행정절차 수행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해외 규제기관 사전상담 비용도 지원 가능한가요?

A. 규제기관 Pre-meeting, 사전미팅, 공식 질의 대응, 규제기관 커뮤니케이션 등 실제 허가·등록 추진을 위한 대응 비용은 지원 가능합니다.

Q6. GMP 인증 취득 및 해외 실사 대응 비용도 지원 가능한가요?

A. GMP 인증 취득, 제조소 실사 대응, 품질시스템 구축, 시설 개선 및 운영 비용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추가시험 비용도 지원 가능한가요?

A. 해외 규제기관이 허가·등록 심사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시험·검증 비용은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약 개발 자체를 위한 임상시험, 연구개발 목적의 비임상·임상시험 비용은 제외됩니다.

Q8. 규제당국의 보완 요청(Query, Deficiency Letter 등)에 대한 대응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해외 규제기관(FDA, EMA, PMDA, NMPA 등)의 허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작성, 제출, 전문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Q9.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시험·검증 비용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규제기관의 공식 보완 요청에 따라 추가 시험, 분석, 검증, 데이터 생성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R&D) 목적의 신규 비임상·임상 시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0. 사업 신청 이전에 이미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생한 규제기관의 공식 보완 요청에 대해 협약 체결 전 집행한 비용도 사업 기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보완 요청 사실 및 비용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11. 보완 요청 대응을 위해 CRO, 규제 컨설팅사, 현지 대리인(MAH) 등을 활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규제기관 대응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경우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첨2

증빙자료 예시

지원분야	성과목표 증빙자료 예시
해외 인허가 및 규제기관 대응 증빙자료 예시	- 해외 허가·등록·승인 신청 및 제출 확인자료 (NDA/BLA/ANDA/MAA, CTD/eCTD/ACTD 제출자료 등) - 규제기관 질의·보완 및 상담 대응 관련 자료 (Query Letter, 보완자료 제출 확인서, Pre-meeting 결과자료 등) - 해외 허가 승인·등록 및 현지 규제 대응 관련 자료 (허가 승인서, 등록 완료 증명서, License, MAH 지정·유지 관련 계약자료 등) - 해외 규제기관 요구에 따른 시험·검사·검증 및 보완자료 확보 관련 자료 (시험결과서, 검증보고서, 보완자료 제출자료 등) - 허가·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자료 - 비용 집행 증빙자료(규제기관 발행 공문, 승인 통지문, 질의서(Query Letter)) (계약서,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등) - 보완 요청 증빙 (Deficiency Letter, Query Letter, 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 Complete Response Letter(CRL), 규제기관 공식 이메일 또는 공문, 전자심사시스템(FDA ESG, CDE 등) 통지 화면 등)

참고 3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 제안요청서

세부 사업명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과제 구성요건	단독
▶ 지원목적 ○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해 과학적·학술적 근거 기반의 기술마케팅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 활동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지원 조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며, 수출 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 기술수출 가능한 에셋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 * 해외 의약품 수출·유통 시장 진입이 가능한 의약품 제조기업(원료·완제) * 의약품 위탁생산을 통해 해외 진출이 가능한 CDMO 기업		
▶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금액	선정 예정 과제 수
(트랙1) 글로벌 학회·전시회·파트너링 행사 참가지원	■ (R&D) 글로벌 학회 참가 등록비 및 관련 출장 경비 ■ (Business Development) 글로벌 전시회, 파트너링 행사 참가 등록비 및 관련 출장 경비 * 타기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업당 최대 25백만원 (단년도)	9社 이상
(트랙2)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지원	[마케팅 전략수립] ■ (마케팅 자료 제작·고도화) IR Deck, 마케팅 티저, 기업 및 제품 홍보자료, 홈페이지, 홍보 영상 등 제작 비용 ■ (마케팅 교육) 마케팅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현지 시장조사) 잠재 파트너·바이어 탐색, 해외시장 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비용 등 ■ (데이터 구매)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글로벌 데이터 구매 비용 (임상, 시장, 보험, RWD, 처방데이터 등) * 데이터 구독형 서비스 이용 시, 구독기간은 전체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기간 초과하여 구독 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월할 계상하여야 함 [현지 마케팅 지원] ■ (학회·전시회·파트너링 행사 연계) 전시회 공식 스폰서십 패키지 구매비, 임차료, 기업 및 제품 홍보자료 제작비, 통·번역비 등	지원기업당 최대 25백만원 (단년도)	9社 이상

지원분야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금액	선정 예정 과제 수
	■ (현지 제품 설명회) 기업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현지 주요 구매 관계자 대상 제품 홍보 활동 및 설명회 개최 비용 * KOL 발굴 행사 개최 비용, 현지 정부 규제·보험·입찰 당국자 또는 의료진 및 병원 등 실수요자 대상 설명회 개최 비용, 수출 계약 소요 비용 등 ■ 기타 해외 마케팅 활동 수행 시 필요한 비용 * 상기 항목 외에 기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마케팅 활동 계획을 제안 가능하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 트랙 1, 2는 중복 지원 가능하며, 동사업 1차 선정기업도 트랙2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 불가능 ○ 신청기업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기간 동안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사전에 제출된 계획 이외의 활동에 사용된 비용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활동 계획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현금) 으로 구성함 (기업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기업 규모별 기업부담금 매칭 조건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30%, 대기업 50% * 기업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대비 해당 비율 매칭 필요 * 예)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국고보조금 25백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은 약 834만원 총 사업비(100%)=국고보조금(75%)+기업부담금(25%) - 선정 평가 과정에서 사업 계획 적절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 될 수 있음 ▶ 선정기업 지원 혜택 ○ 차년도 'KHIDI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 사업신청서에 BIO Europe 참가 계획을 포함한 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대표단 활동(디렉토리북 제작,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해야 함			
▶ 성과목표 및 결과 활용 ○ 최종평가 시 필수 결과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 보고서에 지원 사업을 통한 달성 수출액(USD) 제시 or 신(新)시장 판로 개척 건수 제시 ○ 최종평가 시 목표달성 여부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 ○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성과조사, 공시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유 제품·기술 수출, 공동 연구 등 계약 체결,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시판 허가 등 주요 성과 홍보 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을 통한 성과임을 표현			
지원분야	성과목표 증빙자료 예시		
(트랙1) 글로벌 학회· 전시회·파트너링 행사 참가지원	■ 학회·전시회 참가 확인서, 초록 채택 확인 메일,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 계약 증빙서류, 여비 집행 증빙 등이 포함된 출장 결과보고서		

(트랙2)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지원	[마케팅 전략수립] ■ 제작 홍보자료를 활용한 수출 계약 성과, 교육 성과 보고서 등 ■ 해외시장조사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 ※ 해당 보고서를 통한 수출 기여도 증빙자료 첨부 ■ 데이터 구매 계약서·인보이스, 데이터 분석 보고서, 경제성 평가·위험성 평가 등 해외 보험등재·시장 진입을 위한 분석보고서 등 [현지 마케팅 지원] ■ 파트너사 발굴 실적보고서, 수출 계약 증빙서류, 제작 홍보자료를 활용한 계약 성과, 스폰서십 계약서 및 영수증, 공식 통·번역 기관을 통해 진행한 작업 증빙서류 등 ■ 업무협약(MOU) 체결, 판권 계약 체결, 설명회 결과보고서 등	
▶ 선정평가 기준		
○ 서면 평가		
○ 평가 시 항목 변동 가능		
<평가 기준(안)>		
항목	평가기준	평가 내용
수행기업 역량의 우수성 (40)	수행기업의 우수성(20)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 마케팅사업 추진 의지
	제품·기술의 경쟁력(20)	■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 기술적인 우수성 ■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등
사업 계획의 적절성 (50)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10)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대상의 적합성 ■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 내용의 타당성(20)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의 타당성
	추진 계획의 적절성(10)	■ 수행 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예산의 적정성(10)	■ 사업 예산 금액 산출의 타당성 ■ 예산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10)	사업결과의 기대 효과(10)	■ 사업 종료 후 해외진출 확장 가능성
가점 (최대 7) * 중복 적용 가능	인증 기업 또는 기술 (2점, 개별 건 당)	■ 혁신형 제약기업 ■ 신청 기술이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24~'26) KHIDI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1점, 개별 사업 당)	■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 (현재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기업) ■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 참여기업 (BIO Europe, BIO CHINA, CPHI SEA 등)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피칭 우승 기업 (암젠 골든티켓, 아스트라제네카 K-바이오익스프레스 웨이,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 등)
	중동 전쟁 피해기업 (2점)	■ 최근 3년간('24~'26) 중동 국가 수출 실적 또는 '26년 수출 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 계약 또는 수출 실적 증빙 제출 필요(수출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 가점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불가		

▶ 평가 및 선정 방법

서류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기업,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등 신청서류 검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 기회 부여, 자료제출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처리)



서면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

- 신청기업에 관한 내용, 사업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서면 평가
- 평가 점수에 따라 협약 대상 과제 선정

▶ 본 세부사업 문의처

- 제약바이오글로벌팀 김민주 연구원 043)713-8842, minju929@khidi.or.kr

사업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트랙1)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비 회계검증수수료 - 학화전시회·파트너링 행사 참가 등록비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통신료 - 해외전화사용료 : 해외 출장시 로밍폰 등 사용료(실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 실 소요 경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 실 소요 경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여비는 기업 내부 여비 규정에 따라 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산정해야 하며(정산 시 여비 규정 제출 필요), 자체 여비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사업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트랙2)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2.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증수수료
		4.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6.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자문비)
		7.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8.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9. 통번역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번역료 및 통역료 (실비) * 편성 시 참고기준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통신료 - 우편료 및 우송료 : 사업에 필요한 우편 택배 및 기타 물류 등을 발송하는 비용(실비) - 해외전화사용료 : 해외 출장시 로밍폰 등 사용료(실비)
	임차료 (07)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3.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16)	1.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 실 소요 경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 실 소요 경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 학회·전시회·파트너링 행사 참가 등록비 및 관련 여비는 트랙1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트랙2의 여비는 그 외 글로벌 마케팅 활동 수행 목적의 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 여비는 기업 내부 여비 규정에 따라 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산정해야 하며(정산 시 여비 규정 제출 필요), 자체 여비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 일반용역비로 컨설팅사 비용 등을 집행하는 경우, 정산 시 컨설팅사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주요 학회 및 전시회 [참고]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	---------------

분류	연번	행 사 명	국가	도시	일정
학회	1	SITC (미국 면역항암학회)	미국	피닉스	11.04-08
	2	Obesity Week (미국 비만학회)	미국	워싱턴 DC	11.14-17
	3	SfN (미국 신경과학회)	미국	워싱턴 DC	11.14-18
	4	ESMO (유럽 종양학회)	스페인	마드리드	10.23-27
	5	ICIS (국제 사이토카인 및 인터페론 학회)	영국	글래스고	10.18-21
	6	EASD (유럽 당뇨병학회)	이탈리아	밀라노	9.28-10.02
	7	WCLC (세계 폐암학회)	한국	서울	9.12-9.15
	8	World ADC (국제 ADC학회)	거점별 상이		
	9	EANM (유럽 핵의학회)	오스트리아	비엔나	10.17-10.21
	10	AASLD (미국 간질환학회)	미국	덴버	11.05-11.09
	11	ACR (미국 류마티스학회)	미국	올랜도	11.06-11.11
	12	CTAD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미국	보스턴	11.16-11.19
	13	AES (미국 뇌전증학회)	미국	덴버	12.04-12.08
	14	ASH (미국 혈액학회)	미국	뉴올리언스	12.12-12.15
전시회/ 컨퍼런스	1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미국	샌프란시스코	1.12-15
	2	CPHI Worldwide (EU)	이탈리아	밀라노	10.06-08
	3	BIO Europe (Fall)	독일	켈른	11.09-11
	4	BIO Japan	일본	요코하마	10.7-9
	5	CPHI Middle East	사우디	리야드	12.14-16
	6	BIO Middle East	사우디	리야드	12.14-16
	7	Global Health Exhibition – SaudiArabia	사우디	리야드	10.26-29